

대전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1007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철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엄태모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9. 5. 9. 접수 제219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전 동구 D 지상 건물 중 E호를 2017. 5. 4.부터 2019. 5. 4.까지 임차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이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금 2,000만 원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19371)에서 2020.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12. 11. 확정되었다.

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7. 5. 27. 사망한 후인 2019. 5. 9.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자녀 7명 중 한명인 피고 앞으로 1997. 5.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는 1997. 5. 27.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망인이 사망한 1997. 5. 27.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측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서는 2019. 1. 10.자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1997. 5. 27.이 아니라 처분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가 작성된 날인 2019. 1. 10.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1) 재산 내역

가) 적극재산 (갑 6호증의 1~3, 갑 7호증의 4, 을 1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019. 1. 10. 상속재산 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라 한다) 당시 C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D 대 279㎡ 및 지상 건물(2019. 2. 21. 기준 감정가 834,829,975원)

② G 전 412㎡ 중 390/2,179 지분(2020. 8. 13. 기준 감정가 85,509,300원, 제시 외 건물 및 수목

1,077,000원 포함)

③ H 전 250㎡ 중 390/2,179 지분(G 토지의 가액과 유사)

④ I 대 223㎡(2019. 3. 20. 기준 감정가 200,700,000원)

⑤ J 답 16㎡ 중 19.39/26 지분(별다른 가치 없음)

나) 소극재산 (갑 4, 8호증, 을 1호증의 1~5, 이 법원의 K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19. 1. 기준 L조합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M조합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② I 토지 관련 M조합에 대한 2억 2,100만 원, 근저당권자 N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③ H 및 G 토지상 2019. 1.경 1억 2,000만 원 상당 근저당채무 등

④ D 지상 건물 각 호실에 대한 아래 표 기재 합계 695,026,79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채무내용	채권자	채무금액	비고
당해세	대전 동구청	2,245,390원	교부청구서
재산세	대전 동구청	5,781,400원	채권계산서
1층 일부 임차인	O회사(P)	40,000,000원	2016. 5. 10. 계약

1층 일부 임차인	Q회사(N)	40,000,000원	2016. 5. 10. 계약
R호 임차인	S	60,000,000원	2018. 3. 28. 계약
T호 임차인	U	65,000,000원	2017. 12. 8. 계약
V호 임차인	W	57,000,000원	2016. 10. 11. 계약
X호 임차인	Y	40,000,000원	2016. 7. 4. 계약
Z호 임차인	AA	60,000,000원	2014. 2. 12. 계약
AB호 임차인	AC	60,000,000원	2014. 3. 29. 계약
AD호 임차권등기	AE	55,000,000원	2014. 5. 28. 계약
AF호 임차인	AG	100,000,000원	2013. 8. 24. 계약
AH호 임차인	AI	60,000,000원	2016. 9. 8. 계약
E호 임차인	A	50,000,000원	2017. 4. 7. 계약
합계		695,026,790원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고, 2019년경 C은 대출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부분 경매가 진행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채무자인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 지분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C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별지

목 록

1. 대전 동구 H 전 250㎡ 중 2179분의 1789 지분
2. 대전 동구 G 전 412㎡ 중 2179분의 1789 지분. 끝.

